



## 18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보고

제102회기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보고인 : 위원장 소강석  
서 기 전주남

### 1. 조 직

- 위 원 장 : 소강석
- 총 무 : 신현수
- 위 원 : 서홍중 최창훈 김상신 송종완 장덕용
- 전문위원 : 박요셉
- 서 기 : 전주남
- 회 계 : 장덕용

### 2. 회 의

#### 1) 1차 회의

- ☞ 일 시 : 2018. 4. 2(월) 11:00
- ☞ 장 소 : 총회회의실
- ☞ 결의사항

- ① 총회실무자와 전문위원 박요셉 목사의 경과보고를 받다.
- ② 목회자납세대책에 공헌한 김진표 의원에게 총회감사패를 목사장로기도회시에 수여하도록 총회장에게 청원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총회실무자와 목회자납세 전문위원인 박요셉목사에게 맡겨서 추진하기로 하다.
- ③ 목회자납세에 대한 전국교회의 질의내용을 한국교회법학회와 전문위원 박요셉 목사가 협력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법학회 자료 질의부분을 요약하고 예상 질의내용을 추가하여 총회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하다.

#### 2) 2차 회의

- ☞ 일 시 : 2018. 8. 3(금) 11:00
- ☞ 장 소 : 총회회의실
- ☞ 결의사항

- ① 전문위원 박요셉 목사의 총회목회자납세대책 위원회 활동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.
- ② 103회기 총회보고서 청원사항으로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회기연장을 청원하고 명칭을“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” 또는 교회생태계 특별위원회”로 하기로 하다.

### 3. 사업보고

#### □ 활동보고

- 2017.09~현재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(위원장 소강석 목사) 활동
- 2017.09~현재 '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' 활동 참여 (소강석 목사 공동위원장으로 참여)
- 2017.11.27~12.07 전국 권역별 종교인과세 대책보고회 (본위원회와 기독교신문사 공동주최)
  - 강사 : 소강석 목사, 전주남 목사, 서헌제 교수, 이석규 세무사
  - 경기(새에덴교회), 광주(겨자씨교회), 전주(북문교회), 제주(동홍교회), 부산(부전교회), 대구(달서교회), 대전(남부교회), 서울(오륜교회) 등
  - 연인원 6,000여명 참석, 종교인과세 교재 및 식사 제공 등
- 2017.12.27. '종교인과세 시행 관련 안내사항' 총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게재함.
- 2017.12.28. '종교인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 초판' 총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함.
- 2017.12.29. '종교인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 초판' 3천권 발간하여 무료배포함.
- 2018.01.01.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라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와 한국교회법학회가 협력하여 상담 시작함. (상담자 : 전문위원 박요셉 목사, 한국교회법학회 1600-9830)
- 2018.02.05. '2018 종교인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 1판' 발간비 1천만원 후원(소강석 목사)
- 2018.02.20. '2018 종교인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 1판' 2천권 무료 배포함.
- 2018.03.22. 한국교회와 정부 간 '종교인과세협의체' 참여 (본위원회 전문위원 박요셉 목사) (정부와 7개 종교 : 기독교, 불교, 천주교, 원불교, 유교, 천도교, 민족종교)
  - ① 일선 세무서에 종교인과세 담당자에게 '종교활동비'에 대한 교육 당부함.
    - \*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인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, 구분 회계하여 공적(교회명의 종교활동비 통장과 법인카드)으로 관리하여 사용토록 하면 지급명세서에 총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, 세무조사 제외된다.
  - ② 종교인과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 공동 노력과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종교인과세 가산세 2년 유예안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당부함.
    - \* 과세 시행 첫해는 종교인과 정부의 준비와 실행 부족으로 문제대두 예상.
  - ③ 종교인과세 신고 시에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가능하게 됨.
    - 다만, 국민연금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합의하에 직장가입자로 가능하며,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함. (보건복지부 입장)
    -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님.(고용노동부 입장, 대법원 판례)
  - ④ 2018년 이전까지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 정리하지 못함.
    - 현재까지는 일반 퇴직금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.
- 2018.05.03. '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' 행사 후원 및 참여 (기독교회관)
  - 서헌제 교수, 이석규 세무사, 박요셉 목사, 국세청 과장(사무관) 등
  - 시행 첫해 종교인과세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함.
  - 교단과 교회와 국세청(세무서)의 적극적인 안내와 대처가 필요함을 인식함.
- 2018.05.08. 종교인과세 관련 김진표 의원에게 총회장 감사패 전달 (전국목사장로기도회)
- 2018.05.10. 본위원회는 한국교회법학회 협력으로 "종교인과세 홈페이지(<http://종교인과세.kr>) 및 모바일(핸드폰) 종교인과세 앱(APP) 개발"하여 전국교회 문자 발송
  - 종교인과세 홈페이지는 Daum에서 "종교인과세.kr" 검색하여 볼 수 있음.



- 모바일(핸드폰)에서 '종교인과세'를 검색하여 앱(APP)을 설치하여 볼 수 있음.
- "공동매뉴얼 요약본(PDF 30P분량)"과 "Q&A"로 설명하는 영상"을 볼 수 있음.
- 2018.05.28. "종교인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 요약본과 영상 무료 제공" 알림문자 재발송
- 2018.06.07. "납세자연맹 등의 종교인과세 헌법소원"에 대한 한국교회 1차 공동의견서 제출
  -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청구함.
  - 소원내용 :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선택, 종교활동비 비과세, 세무조사 문제
  - 위 내용에 대해 본위원회와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는 법대 교수, 세무사,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'한국교회 1차 의견서'를 정부에 제출함.
  - 향후 헌법소원 심의 내용에 따라 정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.
- 2018.06.21. 종교인과세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해 참고가 되는 "종교인과세 홈페이지(종교인과세.kr)와 모바일 앱" 전국교회 2차 문자 발송
- 2018.06.27. 종교인과세 반기별(7~12월) 납부 신청(7월10일까지) 안내에 관한 문자 발송
- 2018.07.18. 저소득 종교인들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 알림문자 발송
  - 저소득 종교인들은 2018년 1월 ~12월까지 종교인소득과 재산 등을 증빙하여 2019년 5월부터 첫 신청 가능, 저소득자 대상 2배 확대, 지급액 상향 조정됨.
  - 저소득 종교인들도 '근로소득'이 아닌 '종교인소득'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됨. (참조 : 국세청 근로.자녀장려금 안내사이트)
  - 이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가능케됨
- 2018.07.23. 정부에 "퇴직 목회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 예우 상황" 관련 참고자료 제출
  - 원로목사가 되는 경우 적음. 예우는 교회별로 상이함. 연금가입자도 적음. 등
- 2018.07.30. "종교인과세 가산세 1년 유예안 포함된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" 입법 발의됨.  
(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시기는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, 2018년 소득 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)
- 2018.08.27. 총회 대비 "알기 쉬운 종교인과세 가이드" 전단지 제작, 전국교회 배포계획.

종교인과세 시행 첫해 시행착오가 많을 것임. 총회와 전국교회의 철저한 대비 요망 드림.

## 청 원 서

수신 : 총회장

참조 : 서 기

제목 :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청원의 건

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회기연장을 청원하고 명칭을 “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” 또는 교회생태계 특별위원회”로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.

2018년 9월

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

위원장 소강석

서기 전주남